

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 변경 및 2021년도 시행계획 보고

1. 제안이유

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 「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시·군·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)을 수립한 후 해당 시·군·구의회에 보고하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」는 규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「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시·군·구의회에 변경 사실 및 변경내용을 보고하고 시·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변경 사실 및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」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 변경 및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

1)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【2019 ~ 2022년(4년)】 중 2021년 시행계획

▶ 2차년도(2020년) 세부 시행결과 : 미 실시

코로나19 발생 및 유행에 따른 보건소 업무중단·축소로 제출 생략

▶ 3차년도(2021년) 세부 시행계획

중장기 추진과제(3개 추진전략, 9개 추진과제, 25개 세부사업)에 대한 세부사업별 연차 시행계획

2)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 변경

▶ (변경사유) 코로나19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

▶ (변경대상) 제7기 중장기 주요성과지표 총 11개

3. 참고사항

가.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배경 및 목적

- 1) 1995년부터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과 결과보고 의무화
- 2)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주민건강 향상 도모

나. 수립근거 : 지역보건법 제7조

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“라 한다)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“이라 한다)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
2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·단기 공급대책
3. 인력·조직·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
4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
5.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다. 수립절차

